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이수 기준

2015.02.04

교육	이수 기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기준은 필수 과제 제출 여부와 기타 기준에 의거한다. 1. 필수 과제 제출 2년 과정 중 총 4학기에 해당하는 온라인 교육의 필수 과제는 모두 제출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미제출[붙임1] 시 퇴원 조치한다. (단, 필수과제 제출 기한 미준수[붙임2]는 한 학기에 <u>2회까지</u> 허용한다.) 가.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교육원에서 제시한 연장 기한(1,2차 연장)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한다. 나. 교육생이 제출한 과제는 교육원 내부 평가를 거쳐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원이 제시한 기한 내(1,2차 연장)에 재제출[붙임3]해야 하며,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한 미준수로 간주한다. (단,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육원에 즉시 알림으로써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2. 기타 가. 과제를 도용한 경우(논문, 보고서, 다른 교육생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 1회: 해당 학기 크레딧 0점 초기화 - 2회: 부모님 연락 - 3회: 퇴원 나. 온라인 예절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붙임4 해당) 감점 및 퇴원 조치한다.
오프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이수 기준은 집중교육 참가 여부와 기타 기준에 의거한다. 1. 집중교육 참가 1.1 2년 과정 중 총 4회의 집중교육에 모두 참가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에는 퇴원 조치한다. - 단, 아래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집중교육 1회에 3일 이내의 불참은 허용하며, 총 4회의 집중교육 중 2회까지로

	제한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사망 및 탈상에 해당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붙임5] 다.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정규 교육 및 정규 교육 입시 일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 위의 "가", "나", "다", "라" 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교육원에 알려야 하며 해당 학기 교육 이수 전에 불참 사유서와 함께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수험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학기 교육 이수 전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원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정하도록 한다. 1.2 이 외에 고의로 불참한 경우,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참할 경우는 퇴원 조치한다. 2. 기타 가. 오프라인 집중교육의 참가비를 미납할 경우 퇴원 조치한다. 나. 오프라인 교육생활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붙임6] 해당)감점 및 퇴원 조치한다.
--	---

※ 과제 미제출 기준

- 제출 마감 일 이후에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과제를 올바르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다른 파일, 다른 경로)

[붙임2]

※ 과제 제출 기한 미준수 기준

- 제출 마감 일 이후 과제를 제출 하는 경우
- 2회의 연장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경우

[붙임3]

※ 재제출 기준

- 필수 작성 항목을 누락하거나, 해당 내용에 맞게 작성하지 않을 경우
-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붙임4]

※ 온라인 예절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 게시판의 용도에 부적합한 글을 게시함
- 2) 특정 사이트 가입(교육원에서 공식적으로 개설하지 않은 사이트)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함
- 3) 회원 간 욕설 및 비방(특정 회원 지칭) 글을 게시함

[붙임 5]

※ 사망 및 탈상

구분	대상	일수
사망 및 탈상	부모 및 (외)조부모	3
	(외)조부모를 제외한 부모의 직계존속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백숙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붙임6]

※ 오프라인 교육생활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구분	내용	처리
청소 및 정리 상태 불량	공동 사용 장소 개인사물(세탁물 등) 방치	-500
	간식 후 뒷정리 불량	-500
	퇴실 처리 불이행(청소, 비밀번호 초기화 등)	-500
소란 행위	취침시간이후 이동, 타인침실에서 소란 및 취침	-1,000
	실내 또는 독서실 잡담 및 소란	-500
	도박, 흡연, 음주 행위	퇴원
	폭행 또는 교유 간에 다툰 자	-1,000
시설물 및 소지품 휴대 위반	본인의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한 경우(분실물 발생)	-1,000
	인화물질 위험물질 침실 반입자	-1,000
	공용 시설물(노트북, 책상, 의자 등) 파손, 출입증카드 분실	-1,000 현금배상
	수업 중 휴대폰 사용(통화 및 문자 등)	-500
양심 불량	타인의 물건 허락 없이 손대는 자	-500
공중도덕 및 기본생활태도 불량	혐오스럽거나 야한 복장 용모 행동	-500
	남녀관계 불미스러움	퇴원
	외부인을 동행 시킨 자	퇴원
일과표 미 준수	무단 외박·외출자	퇴원
	단체행동 이탈 (10분 이상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1,000
	지각	-1,000
	점호시간 불이행	-1,000
기타	교칙, 교사지시 불이행(위반사실 불인정)	퇴원